

라. 기타

○공고 및 공람

-건명:도심재개발 마포로3구역 제7지구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

-일시:1997. 1. 13~1997. 1. 25(14일간)

-게재신문:문화일보, 내외경제신문('97. 1. 11)

-공람장소:마포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

-의견접수:없음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김건재 전문위원)

○동 건물 건설부고시 제345호(79. 9. 21)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, 서울시고시 제412호(81. 11. 13) 및 서울시고시 제15호(97. 1. 25)로 사업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된 도심재개발 마포로 3구역 제7지구에 대하여 재개발사업계획중 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포함하여 재개발구역울 변경지정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음.

○그 주요 내용을 보면, 재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을 마포구 아현동 606-8의 52필지 2,949.40㎡로 변경하고, 공공시설의 위치 및 면적을 아현동 600-2의 19필지 806.6㎡로 하고자 하는 것임. 동 구역은 서울시 제18차 건축심의(96. 5.15)의결에 따라 지하층 주차장의 주차방식이 재검토되어 그에 따른 지하층수 및 일부건축계획을 변경하여 서울시 제26차 건축심의(96. 7. 10)에 통과된 내용으로 서울시고시 제15호(97. 1. 25)로 도심 재개발구역(건축계획)변경된 바 있으며, 도시재개발 제4조제2항 및 도시계획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공고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마친 바 있음.

○그 주요 내용을 보면, 재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을 마포구 아현동 606-8의 52필지 2,949.40㎡로 변경하고, 공공시설의 위치 및 면적을 아현동 600-2의 19필지 806.6㎡로 하고자 하는 것임.

동 구역은 서울시 제18차 건축심의(96. 5.15)의결에 따라 지하층 주차장의 주차방식이 재검토되어 그에 따른 지하층수 및 일부건축계획을 변경하여 서울시 제26차 건축심의(96. 7. 10)에 통과된 내용으로 서울시고시 제15호(97. 1. 25)로 도심 재개발구역(건축계획)변경된 바 있으며, 도시재개발 제4조제2항 및 도시계획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공고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마친 바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질의요지(유용봉 위원): 당초 아현동 606-8의 48필지인데 4필지(총 52필지)가 늘어난 부분을 도면에서 지적해 주시고, 녹지로 있다면 현재 기본지역 3-7지구에 대하여 묶은 이유에 대하여 설명바람.

○답변요지(황정부 도시정비과장): 공공용시

설(용지)가 포함되어야만 사업시행이 가능함.

5. 토론요지:없음

6. 심사결과: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동의하는 것이 가하다고 의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없음.

8. 기타사항:없음

아현초등학교앞 지하보도내
마포구청 별관 신축공사에 관한
行政事務調査計劃(案)

| | | |
|----------|-----|---|
| 의안 번호 | 171 | 제안년월일: 1997. 2. 21. 제안자: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|
|----------|-----|---|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~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현초등학교앞 지하보도내 마포구청 별관 신축공사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,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조사기간은 60일간으로 한다(1996. 2. 18 ~4. 17.)

-조사대상기관은 마포구청, 마포구 보건소로 한다.

-조사반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한다.

-조사장소는 마포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로 한다.

3. 관계법규

-지방자치법 제36조

-지방자치시행령 제16조~제19조

-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

아현초등학교앞 지하보도내
마포구청 별관 신축공사에 관한
行政事務調査計劃(案)

1997年 2月

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

아현초등학교앞 지하보도내

마포구청 별관 신축공사에 관한
行政事務調査計劃(案)

1. 調査의 目的

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~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현초등학교앞

지하보도내 마포구청 별관 신축공사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,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구 행정이 효율적으

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 2. 調査期間
 1997. 2. 18.~4. 17.(60일간)
 3. 調査實施 對象機關
 ○마포구청, 마포구 보건소

4. 調査委員會 編成 및 調査場所

| 구 분 | 조 사 위 원 | 대상기관 | 조사장소 | 사무직원 |
|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| [위원장] 이진표 [간 사] 채재선 [위 원] 김세창, 김순금, 이인구, 한대운, 홍성환 | 마포구청, 마포구보건소 | 행정사무조사 위원회실 | 전문위원 김건재 담당 박춘배 |

5. 調査日程

| 구 분 | 일 정 | 내 용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|-----|
| 준비 단계 | '97. .18. | ○조사관계 자료수합 | |
| | 2.22. | ○조사계획서 수립, 채택(위원회) | |
| | 2.24. | ○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| |
| | | ○조사계획 통보 | |
| | | ○조사자료 검토, 문제점 파악 | |
| 실시 단계 | 3. 5. | ○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채택 및 이송 | |
| | 3. 6. | ○서류제출 및 보고요구서 채택, 이송 | |
| | '97. 3.11. | ○조사의 건 상정 ○국장인사 및 간부소개 ○조사할 사안에 대한 보고 ○조사실시 | |
| 조 처 사 리 결 단 과 계 | '97. 4.11 | ○조사종결 | |
| | '97. 4.11. | ○조사결과보고서 작성 | |
| | 4.17. | ○조사결과보고서 채택(위원회) ○조사결과 보고(본회의) ○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| |

6. 調査要領

조사는 아현초등학교 앞 지하보도내 마포구청 별관 신축공사와 관련한 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고 및 질의, 서류제출요구와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(증인)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.

7. 調査할 事案의 範圍

- 가. 아현초등학교앞 지하보도내 마포구청 별관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용역비 내역
- 나. 기타 신축공사와 관련한 업무와 부조

리 요인 확인 조사

8. 所要豫算

가. 조사실시에 따른 위원회 간담회비
 $7인 \times 20,000원 \times 15일 = 2,100,000원$
 나. 예산과목: 임법및선거관계, 지방의회운영, 의정활동, 경상적경비, 의회비 (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)
 ※기타 경비는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집행

9. 執行事項

가. 위원장은 조사관계 조사를 수합하고

간사와 협의하여 조사계획서를 작성,
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.

나.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
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.